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검 토 보 고

〈 아동학대·가정폭력 행위자가 상담위탁,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949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95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등(제221094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제안경위 등(제2210950호)	3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내용	5
2.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종류·제재	7
3. 상담위탁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23

I. 제안경위 등(제2210949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2025. 6. 19.

다. 회 부 일: 2025. 6.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의 필

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II. 제안경위 등(제2210950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박희승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2025. 6. 19.

다. 회 부 일: 2025. 6. 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의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위탁기관의 상담·치료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를 계도하는 것이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및 치료 등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

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제2210949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안”)과 제2210950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정폭력처벌법안”)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로 부과된 의료기관 위탁이나 상담위탁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제2210949호(아동학대처벌법안) 제6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제2210950호(가정폭력처벌법안)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2.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의 종류·제재

가. 피해자 보호조치의 구조

-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각각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그 규율대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가 상호 중첩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양 법률의 규율 내용도 유사한 면이 있음.¹⁾
-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절차의 진행 중에 피해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 법률 모두 수사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조가 유사함.

< 양 법률의 피해자 보호조치 구조 >

구분	판 단	내 용
응급조치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 등*	행위 제지,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
긴급임시조치	수사기관(사법경찰관)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직접/전기통신 이용)
임시조치	법원의 결정	접근 금지(직접/전기통신 이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응급조치 가능

1) 이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함을 밝히고 있음.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또는 급박한 아동학대·가정폭력의 중지·예방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취하는 제지,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의미함(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3조 및 제19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제8조의2 및 제29조).²⁾

2)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② ~ ⑩ (생략)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 7. (생략)

② ~ ⑨ (생략)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이중 긴급임시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접근 금지 등을 법원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임시조치로의 이행 또는 그 취소가 예정되어 있는 잠정적 성격의 조치임(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³⁾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 6. (생략)

② ~ ⑫ (생략)

- 3)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시간 내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청구를 배척하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되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임시조치의 의의와 종류

□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란, 아동학대범죄·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로부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접근 금지, 상담위탁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의미하는 것임.

○ 검사는 대상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⁴⁾ 법원은 대상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⁵⁾

4)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잠정조치 중 의료기관 등 위탁(제29조제1항제4호) 및 상담위탁(제29조제1항제6호)을 검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양 법률은 임시조치의 종류도 유사한데, 긴급임시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는 임시조치로 할 수 있으며, 상담위탁,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등도 임시조치로 할 수 있음.

-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 등 행사에 대한 제한·정지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만 인정되고 있고,⁶⁾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가정폭력처벌법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법률의 임시조치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함.⁷⁾

5)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 ⑨ (생략)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② ~ ⑫ (생략)

6)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피해자의 친권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친권 등 행사의 제한·정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 양 법률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비교 >

구분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퇴거 등 격리	○	○	○	○
100m 이내 접근 금지	○	○	○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	○	○
친권 등 제한·정지	-	○	-	-
관련 기관 상담위탁 등 ¹	-	○	-	○
의료기관·요양시설 ² 위탁	-	○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	-	○

주: 1.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상담 및 교육 위탁,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대상 상담위탁
 2.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요양소로 표현

- 7)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상담소 등(註: 동법에서는 ‘상담소등’으로 약칭)이란,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의미함(동법 제4조 참조).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제63조,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이러한 제재는 모든 종류의 임시조치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 아동학대처벌법은 격리, 접근 금지 및 친권 등 제한·정지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동법 제59조제1항·제2항),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요양시설에의 위탁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동법 제63조제4호의2).⁹⁾¹⁰⁾

8)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註: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및 친권 등 제한·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 3.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9)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註: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 6. (생략)

② (생략)

- 10) 동법은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유치소·구치소 유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형법」 제145조에 따른 도주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6. 2. 12.에 시행된 법률 제21085호 아동학대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에 도입되었음.

- 가정폭력처벌법도 격리, 접근 금지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동법 제63조제2항·제3항),¹¹⁾ 그 밖에 다른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아니함.¹²⁾

< 양 법률의 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

구분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퇴거 등 격리	(형벌) 2년↓/2천만원↓/구류 ※ 상습 시 5년↓/5천만원↓	(형벌) 1년↓/1천만원↓/구류 ※ 상습 시 3년↓/3천만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해당 없음
친권 등 제한·정지		
관련 기관 상담위탁 등 ¹⁾	(과태료) 1천만원↓	-
의료기관·요양시설 ²⁾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	-

주: 1.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상담 및 교육 위탁,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대상 상담위탁
2.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요양소로 표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11)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생 략)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註: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 12) 동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장·구치소 유치 위반에 대하여도 「형법」상 도주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기타 유사 조치 위반 시 제재와의 비교

1) 임시조치와 유사한 기타의 조치·처분 등

□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임시조치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조치·처분 등으로는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및 보호명령 등이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긴급임시조치는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관여 없이 수사기관이 임시조치의 종류에 속하는 조치의 일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내용이 임시조치의 내용 일부와 공통됨.

○ 보호처분은 형벌을 보충 또는 대신하여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에 부과되는 종국적 성격의 조치로서, 아동학대·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사건의 성질·동기 등을 고려할 때 형벌 외에 상담·치료·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루어짐.¹³⁾

13)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친고죄인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흠결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벌 대신 상담·치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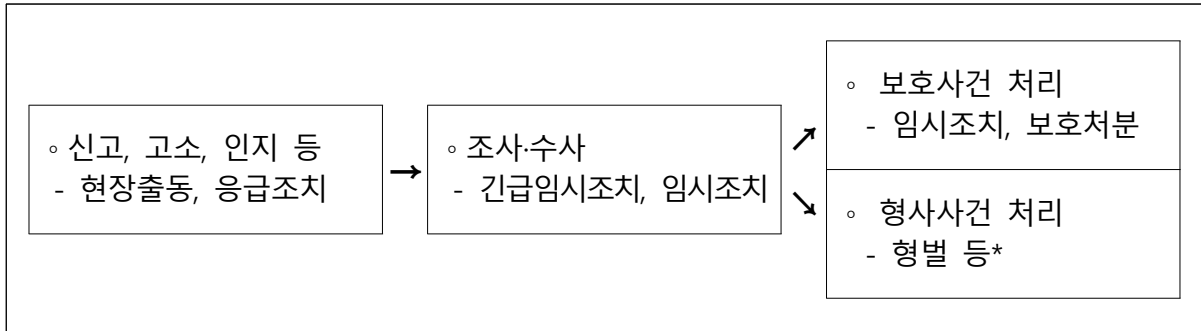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 >



* 수감명령 등 병과 가능(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의2)

-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모두 보호처분으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을 각각 인정하고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¹⁴⁾¹⁵⁾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14)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감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 ⑦ (생략)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양 법률의 보호처분 종류 >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친권 등 행사 제한·정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관찰
보호시설 등 감호위탁	보호시설 등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 상담위탁	상담소 등 상담위탁

- 한편,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 스스로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명령도 규정하고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¹⁶⁾

-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② ~ ⑥ (생략)

- 15) 친권 행사의 제한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은 임시조치에는 규정하지 않고 보호처분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16)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다만, 보호명령의 종류에는 양 법률에 큰 차이가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의 보호명령에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위탁 등이 포함되어 그 종류가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명령보다 더 다양함.

- 한편, 법원은 보호명령 결정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도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¹⁷⁾

-
-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② ~ ⑦ (생략)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② ~ ⑥ (생략)

17)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양 법률의 보호명령 종류 >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아동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접근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
친권자·후견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	-
-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피해아동의 복지시설 보호위탁	-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치료위탁	-
피해아동의 상담소 등 상담·치료위탁	-
피해아동의 연고자 등 가정위탁	-

2) 임시조치와 유사 조치·처분 등의 위반 시 제재 비교

□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임시조치 위반 시의 제재를 기타 유사한 조치·처분 위반 시 제재와 비교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는 동종(同種)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에 비하여 경하게 규정되어 있음.¹⁸⁾

- 양 법률에서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벌의 대상이 되나 같은 내용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4호, 가정폭력처벌법 제66조제2호).¹⁹⁾

○ 이와 달리, 보호처분과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은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호처분·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동종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와 동등한 수준의 제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동법 제59조 및 제63조),²⁰⁾

18) 이러한 차이는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법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부과하는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됨.

19)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가정폭력처벌법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0)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동종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 중한 제재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63조 및 제66조).²¹⁾

- 다만, 양 법률 모두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임시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註: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및 친권 등 제한·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註: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및 친권 등 제한·정지)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생략)

② (생략)

21)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註: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註: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양 법률에서 각 유형의 임시조치와 그 유사 조치·처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 아동학대처벌법				
퇴거 등 격리	(과태료) 1천만원 ↓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해당 없음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100m) 접근 금지·제한	(과태료) 1천만원 ↓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제한	(과태료) 1천만원 ↓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친권 등 행사 제한·정지	(과태료) 1천만원 ↓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관련 기관 상담 위탁 등	해당 없음	(과태료) 1천만원 ↓		해당 없음
의료기관·요양 시설 위탁	해당 없음	(과태료) 1천만원 ↓		해당 없음
유치장·구치소 유치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가정폭력처벌법				
퇴거 등 격리	(과태료) 300만원 ↓	(형벌) 1년 ↓ / 1천만원 ↓ / 구류	해당 없음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100m) 접근 금지·제한	(과태료) 300만원 ↓	(형벌) 1년 ↓ / 1천만원 ↓ / 구류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제한	(과태료) 300만원 ↓	(형벌) 1년 ↓ / 1천만원 ↓ / 구류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친권 행사 제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형벌) 2년 ↓ / 2천만원 ↓ / 구류	
관련 기관 상담 위탁 등	해당 없음	-	(과태료) 500만원 ↓	해당 없음
의료기관·요양 시설 위탁	해당 없음	-	(과태료) 500만원 ↓	해당 없음
유치장·구치소 유치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 노란색 음영 부분은 각 개정안에 따른 개정 대상 부분

3. 상담위탁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검토의견

□ 어떠한 행위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어느 정도의 제재를 부과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행위의 성질,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임.²²⁾

- 다만, 제재의 부과는 수범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재에 있어서는 제재의 대상 행위와 제재 간의 비례성, 다른 제재와의 형평성 등 입법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특히 아동학대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은 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위탁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임시조치도 규정하고 있고,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보호처분·보호명령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정안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는 이종(異種)의 임시조치와 동종의 보호처분·보호명령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특히 범죄화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으로는,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2헌바85 등.

□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요양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개정안 발의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現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4호의2는 상담 및 교육 위탁 등 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가정폭력처벌법안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접근 금지 등 다른 유형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하여도 형벌 등의 제재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라고 판단됨.

○ 다만, 가정폭력처벌법안이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동종의 보호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 경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와 동종 보호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은 동종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하여 가정폭력 처벌법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가정폭력처벌법안 처리 시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와 동종의 보호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현 행		개정 시
	보호처분	임시조치	임시조치
퇴거 등 격리	해당 없음	(형벌) 1년↓/ 1천만원↓/구류	좌동
(100m) 접근 금지·제한	(형벌) 2년↓/ 2천만원↓/구류	(형벌) 1년↓/ 1천만원↓/구류	좌동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제한	(형벌) 2년↓/ 2천만원↓/구류	(형벌) 1년↓/ 1천만원↓/구류	좌동
친권 등 행사 제한·정지	(형벌) 2년↓/ 2천만원↓/구류	(형벌) 1년↓/ 1천만원↓/구류	좌동
관련 기관 상담 위탁 등	(과태료) 500만원↓	-	(과태료) 300만원↓
의료기관·요양 시설 위탁	(과태료) 500만원↓	-	(과태료) 300만원↓
유치장·구치소 유치	해당 없음	-	좌동

주: 노란색 음영 부분은 개정 대상 부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①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법률 제21085호 아동학대 처벌법이 2026. 2. 12. 시행되었으므로 시행 초기 단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② 가정 폭력처벌법안의 경우 그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안에 대하여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의 성격을 고려할 때 상담위탁 보호처분 불이행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3